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金 周 洪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

2009

誠信女子大學校 金融情報大學院

金融情報科 金融 . 保險專攻

辛 建 容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

金 周 洪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5月

誠信女子大學校 金融情報大學院

金融情報科 金融 . 保險專攻

辛 建 容

認 准 書

辛 建 容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2009年 5月

誠信女子大學校 金融情報大學院

논문개요

평균 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조 등은 보험산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고, 또한 자본시장통합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업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물론 보험사 판매 상품들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 보험사들은 이번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새로운 보험업법 안에는 보험가입자의 나이와 소득 수준, 투자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합한 상품을 팔아야 한다는 '적합성의 원칙과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가 도입되는 등 소비자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증시 활황 속에서 잘 팔리던 펀드들이 결국 불완전 판매 논란을 야기했던 점에 비추어 변액보험 상품을 비롯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현재 보험업법의 국회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적용은 올해 말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증권과 은행들은 투자자 보호가 대폭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당장 보험상품 구매 시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된 보험업법 적용이전까지 철저한 자체교육 등을 통해 미리 보완해 나가서 고객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야 하는 점이다. 하지만 보험상품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자본통합시장법 이후에 보험산업이 처하게 될 상황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고,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해 보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4
1.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4
(1)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	4
(2) 자본시장통합법의 목적 및 주요 내용	5
(3)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후 예상되는 주요변화	10
(4) 금융투자업법의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미칠 영향 개관	11
2.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이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	14
(1) 보험업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	15
(2) 보험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면	18
(3) 보험업법 개정안의 쟁점사항	20
(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23
3. 보험업법 개정안	28
(1) 보험업법 개정안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28
(2) 보험회사의 금융투자업무 영위방법	34
(3) 보험업법 개정안의 남아있는 문제점	37
III. 결론	40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국회가 2007. 7.에 의결하고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중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또는 자통법으로 불림)의 제정과 더불어 정부는 현재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추진 중인 개정 보험업법이 ‘보험관 자통법’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2,11]에 의하면,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여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글로벌 트렌드로 대두되고 있는 금융겸업화와 경쟁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시장통합법은 종전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선물거래소법의 6개법을 폐지하면서 법체계를 개편한 법률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은 단순히 증권 관련 법률의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규제 체계 전반을 개혁하여 금융시장의 빠르고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의 제정은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체제를 자본시장 중심의 직접금융체제로 전환시키고 금융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 및 금융관행을 개혁하는 것이다. 영업 관련 규제 완화와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행위 규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규제 체계 개혁은 금융회사들이 칸막이식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무한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한 자본시장 중심으로 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이 이루어지고, 고객 중심의 마케팅과 금융권간 판매채널 통합으로 향후 금융 회사 간 경쟁에서 우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근본적 변화가 시

작됨으로써 보험회사는 새로운 시각에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은 글로벌화, 겸업화 그리고 대형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각국의 금융회사 조직 및 업무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수익기반의 확보에 경쟁우위를 선점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보험시장은 자체 경쟁회사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은행, 증권을 비롯한 타 금융권까지 보험시장 참여자로 진입함으로써 생존을 위한 경쟁환경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겸업화로 전환되는 흐름을 타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펀드 및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조직체계를 지주회사체계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금융질서 개편에 대응하였다. 증권 산업도 금융시장내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겸업화 환경에 적극 부합하고자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타 금융권에 비해 겸업화시대에 대비한 조직, 상품, 채널 등의 대응체계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시장내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주요 금융선진국의 보험산업은 이미 이러한 금융겸업화의 현상을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였고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추어 겸업화하에서의 경쟁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국내에서도 겸업화 추세에 맞추어 보험회사가 보험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미래 보험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업화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앞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은행에 이어 증권사들의 합종연횡이 시작 되었고 특히 2007년 4월 ‘생명보험사 상장 허용’이라는 보험 빅뱅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울리면서 보험사들은 몸집을 부풀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권도 지주회사 도입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시장통합법 제정이 필수불가

결하게 된 것이다. 은행이 보험회사와 연계해 보험성격이 짙은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것으로 은행과 보험사가 상호제휴와 업무협력을 통해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이며 프랑스어로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인 방카슈랑스는 갈수록 위력이 커지고 있는 데다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업은 도약의 전기를 맞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2007년의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588억 달러, 세계 7위의 규모였다. 하지만 외국계 보험사들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면서 국내 보험 산업의 경쟁력은 사실상 세계 7위와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은행을 통한 보험 상품 판매는 급속히 늘어나 전체 보험 상품 판매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은행과 은행원이 보험 대리점과 모집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보험사의 자산도 2005년 기준으로 생보 239조3610억 원, 손·보 49조4070억 원 등을 다 합하더라도 은행권 774조8240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5]

이러한 시점에서 통과된 자통법으로 인해 금융 칸막이가 사라지면서 금융업간의 경쟁은 더욱 가열될 듯하다. 은행권은 이미 지주회사를 통해 계열 보험사를 운영하며 보험업 고유영역을 잠식하고 있는데다 자통법 통과로 등장하게 될 대형투자은행도 보험업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에 본 논문은 자본시장통합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1)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

1990년대 말 IMF 구제금융의 지원 등 경제위기의 격변의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도 우리 자본시장은 실물경제 규모에 맞춰 발전하지 못하고, 외국의 선진 투자은행(IB)과 비교하여 규모나 수익성 면에서 크게 뒤쳐져 있었다. 이는 경제·금융과 관련한 정부정책이 미진하거나 개별 금융기관의 노력이 부족한데 기인하기도 했지만, 금융관련 법률이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즉, 현행 우리 법제는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상이하여 규제차익과 투자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며, 개별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의 종류가 제한적으로 열거 되어 신종 투자상품을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편 선진 투자은행이 기업금융(Investment Banking),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증권서비스(Securities Service) 등 다양한 금융투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음에 반해, 현행 우리 법제는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업간 겸영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2월 17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기본 방안을 발표하고 그 법안을 마련하여 2006년 6월 30일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 법안은 2007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동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2008년 4월 동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2) 자본시장통합법의 목적 및 주요 내용

[11]에 의하면, 2006년 6월 30일 입법 예고되어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을 단일의 법률로 통합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규율체제를 일원화 하였다. 동법 제정안은 기존의 금융관련 규제를 개편하여 시장의 자율과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포괄주의¹⁾ 규율체제로의 전환

과거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증권회사 등이 신종 상품을 개발하여 매매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면 ‘투자성(원본손실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하여 동 정의에 포섭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의

1) 규제 원칙을 지칭하는 말로써 포괄주의(NEGATIVE SYSTEM)는 제한.금지하는 규정 및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반면, 열거주의(POSITIVE SYSTEM)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나 금지가 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하는 체제이다.

규율대상으로 삼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새롭게 등장하는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²⁾.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금조달 및 위험회피 수단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 같은 포괄적 정의로 인해 변액보험상품 등이 자본시장통합법 상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 등 업종 간 상품경계가 허물어지고 복합금융상품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투자자는 규제의 공백 없이 새로운 상품의 등장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제도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13]

나. 기능별 규율(Functional Regulation)체제의 도입

과거 자본시장 관련 법령체제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기관별 규율체제(Institutional Regulation)를 취하여 금융회사별로 상이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금융투자회사별로 상이한 규율이 적용됨에 따라 규제강도에 차이가 있을 때 규제가 약한 곳을 찾아가게 하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과 투자자 보호³⁾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이러한 기관별 규율체제를 기능별 규율

2)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원본’에는 보험계약에 따른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부분만으로 ‘투자성’을 판단한다.

3) [21]에 의하면, 동일한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업의 경우, 증권회사가 파생상품의 매매업을 하거나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규제(진입규제, 건전성규제, 거래 상대방 제한 등)가 증권거래법에는 일부 존재하나, 은행·보험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동일하지 않다. 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이외의 기구를 이용하는 비정형간접투자(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등 vehicle을 이용한 간접투자)의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의 투자자보호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Functional Regulation)체제로 전환하여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 4개의 인가업무와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 2개의 등록업무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면서(동법 제6조), 동일한 성질을 갖는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⁴⁾. 한편, 업무의 속성이 동일하더라도 투자자의 위험판단능력을 규제수준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고객에 따라 규제강도를 달리 하였다.[13]

다. 업무범위의 확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전 법령체계는 각 금융회사 별로 금융투자업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겸업화와 대형화 된 투자은행(IB)의 출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기능별로 분류된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업)에 대해 상호간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대형화된 금융투자기관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민법, 상법 등 현행법상 설립가능한 모든 투자기구(Vehicle)를 집합투자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동법 제9조 제18항)⁵⁾,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4) 구체적인 예를 들면, 첫째, 현재 은행이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영위하던 장외파생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의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자보호규제와 거래건별 상근임원 승인 등의 내부통제 규제도 적용받도록 하였다. 둘째,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등 금융위원회 이외의 부처 소관인 개별법상 펀드에 대해서도 이익보장·손실보전 금지, 펀드재산 보관·관리의 위탁의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자보호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였다.

5) 과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는 펀드의 형태를 수익증권 계약형태인 투자

집합투자대상자산으로 정의⁶⁾함으로써 집합투자업의 개념과 업무범위를 확장하였다. 또 동법의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예탁금으로 소액결제⁷⁾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종래 은행에게만 허용되었던 대고객 환전업무 및 외국환 자본거래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동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등).[14]

라. 투자자 보호제도의 강화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포괄주의적 규제에 전환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⁸⁾이 더욱 커졌다. 이에 동법에서는 경제적 실질이 금융투자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투자자보호의 대상을 종전까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았던 장외파생상품거래, 비정형 간접투자 계약 등으로 확장하였다. 나아가 금융투자업자가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자가 일반투자

신탁, 주식회사 형태인 투자회사, 합자회사 형태인 투자전문회사 등 일부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등 설립가능한 모든 법적형태의 투자기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6)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포괄적으로 정의됨에 따라 날씨, 탄소배출량, 물가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개발이 예상된다.

7)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참여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등의 반대로 장기간 표류하였으나 금융소비자 및 여론 등의 압박으로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한국은행 앞 자료제출 및 검사권 부여를 전제로 개인자금에 한하여 지급결제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8) [19]에 의하면, 포괄주의적 규율체제의 도입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될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의 분쟁의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자 보호의 강화는 금융혁신의 성과를 분쟁해결 비용으로 소진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투자자보호의 강화는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화와 금융투자업의 범위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자인지 전문투자자⁹⁾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동법 제46조 제1항),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 면담과 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knowyour-customer-rule)하여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6조 제2항).

한편,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일반투자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을 받도록 의무화(동법 제47조 제1항, 제2항)하면서, 동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동법 제48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을 도입하였다. 이처럼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자를 그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두으로써 한정된 규제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꾀하고 있다.[8]

마. 건전성 규제의 합리화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율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및 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시장상황과 규제여건을 감안하여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및 건전성 관련 규제는 강화 또는 유지하되 과도한 규제는 일부 완화하는 등 규제수준을 합리화 하였다.

우선 신탁회사와 투자일임회사에 대해서도 운용자산규모가 6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자산이 1천억원

9)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의미 하고,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한편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동의 받은 경우 일반투자자로 간주한다(동법 제9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0조)[2]

이상이거나 운용자산 규모가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주권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상근 감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상근감사와 별도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준법감시인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회사의 지배 구조를 강화하였다.

다음으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가입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감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그동안 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되던 장외파생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 요구 수준을 적기시정조치의 기준비율(150%)을 감안하여 300%에서 200%로 완화 적용함으로써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였다.[13]

(3)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후 예상되는 주요변화

[7]에 의하면, 금융시장내 생보사 입지와 서비스 경쟁력이 약화된다. 은행은 금융지주사 방식에 부합, 대형화를 완료하고 증권사도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처럼 대형투자사로 전환된다. 보험사는 대형은행이나 대형금융사와 경쟁해야 하는데 기본 금융시스템인 지급결제 기능마저 금융투자사가 가질 경우에 지급결제기능이 없는 보험사는 서비스 경쟁서 처진다.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와 겸업범위' 규정이 생보사의 상대적 경쟁력만 저하시킨다. 자통법은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성면에서 폭넓게 정의하고 고유영역을 명확히 했는데 그동안 분류가 모호했던 '장외파생상품'도 아예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시켰다. 또한 금융투자사는 증권관련 업무도 겸영케

해 투자업무의 시너지 효과도 예상된다.

자통법상 '판매행위규제'인 강화된 설명의무, 투자자 특성 파악 의무, 투자권유 적합성 원칙, 원치 않는 투자권유 금지 등이 투자성 보험상품에도 그대로 적용돼 결국 중복규제를 받게 된다는 우려도 따른다. 이 같이 거절 불가능한 대세인 '자통법'시대에 생보사들의 생존을 위해선 무엇보다 금융시장내 시장지위 유지 및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

생보사들의 생존전략으로 전반적인 금융시장변화를 분석하는 안목이 요구된다. 이런 바탕 위에서 신 금융시장 대응 판매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보험지주사제'를 적극 '도입'하고 '대형화'에 나서야 한다. 지급결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겸영, 장외파생상품 취급 등 업무영역 확대부터 준비하며 은행지주사 대응 보험 고유의 지주사를 확립해야 한다. 보험상품을 명확히 정의하여 보험산업 고유 영역 지키기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소비자 신뢰가 금융상품 판매경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인 만큼, 보험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보험판매행위기준' 마련은 생보사들 스스로가 지켜야 할 큰 과제다.

(4) 금융투자업법의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미칠 영향 개관

가. 보호고객의 확대

종래의 기관별 규제는 규제사각, 규제차익을 야기하여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¹⁰⁾. 예를 들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간접투자기구를 이용하는 비정형간접투자(민

10) 금융기관별로 감독주체, 규제내용 면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사각지대나 불균형은, 재정경제부, 『금융투자업법제정방안』, 2006, p. 9.에 상세한 표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를 피하기로 한다.

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등의 기구를 이용한 간접투자) 등이 규제사
 각 지대에 있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법은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을 통합
 하여 기능별 규제방식을 채용한 법률로서, 기관별 규제의 문제점을 걷어
 냈다. 금융투자업법은 기능적 공통성이 인정되면 모든 금융투자업에 대해
 서 균일하게 적용되므로, 해당 고객 모두에게 원칙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금융투자업이라도 기능적 특수성이 인정되
 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별로 개별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
 다. 이리하여 금융 투자업법 제4장이 영업행위규칙을 규정하면서, 제1절을
 공통영업행위규칙으로 기타 절들을 금융투자업별 특수영업행위규칙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기능별 규제방식의 도입은 향후 보험업법 개정
 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보험업이 갖는 특수한 측면을 제
 외하고는 보험업법의 개정이 금융투자업법의 영업행위규제와 균형을 이루
 어야 기능별 규제정신에 부합하게 되기 때문이다. 영국의 영업행위규제는
 이러한 기능별 규제방식이 채용되어 있는 전형적 사례이다. 즉, 영국의 영
 업행위규제는 투자(투자적 요소가 있는 보험 포함)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COB: Code of Business)와 투자적 요소가 없는 보험¹¹⁾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ICOB: Insurance Code of Business)로 분리되어 있다. 기능적 공통
 성이 있는 부분은 ICOB가 COB의 규제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기능적 특
 수성이 있는 부분은 ICOB와 COB가 특수성에 어울리는 상이한 규정내용
 을 각각 갖고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업법이 이러한 선진적 기능별 규제방
 식을 수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향후 보험업법 개정에도 동일한
 규제방식이 채용되어야 한다. 다만 기능적 공통성과 특수성이란, 해당 국
 가의 금융산업 전체 또는 개별의 발전 형태나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될 역
 사적, 맥락적 성격을 띤 것이다. 타국의 관점에 따른 기능적 공통성과 특

11) 이하에서 '보험'은 투자적 요소가 없는 보험을 가리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유사보험의 규제문제이다. 농협공제, 우체국 보험 등 소위 유사보험은 현재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상이한 금융업 사이에 기능적 공통성을 발견하여 적용법규를 통합하는 것이 영국과 일본과 같은 금융선진국의 추세인데, 심지어 동일한 금융업 사이에서 적용법규를 달리하여 규제사각 또는 규제차익을 야기하는 것은 후진적 현상이다. 보험업법의 유사보험에의 적용이 수차례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금번 보험업법의 개정을 보험권의 낙후를 탈피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10]

나. 고객보호 수준의 대폭 강화

금융투자업법은 고객보호의 수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최근 금융업법의 획기적 개혁을 단행한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업무영역 및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이로 인한 고객피해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고객보호를 대폭 강화한다는 점에서 지향점이 같다. 금융투자업법은 아래와 같이 고객보호 수준의 대폭 강화를 통해서 그러한 입법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으로 평가 된다.

금융투자업법상 강화된 영업행위규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장 제1관에서 신의성실의 의무 등을 규정한다. 흔히 고객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업자가 부담해야 할 원칙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의무(제37조)가 규정되어 있고, 상이한 종류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관리를 위해 정보교류의 차단 등을 규정한다(제44조, 제45조). 둘째, 제4장 제2관에서 투자권유의 규제를 규정한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적합성의 원칙(제46조), 설명의무(제47조), 부당권유의 금지(제49조), 투자권유준칙의 제정(제50조)이 적용되고, 투자권유

대행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지행위(제52조)가 적용된다. 셋째, 제4장 제3 관에서 직무관련정보의 이용금지 등을 규정한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 직무관련정보의 이용금지(제54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제55조), 약관(제56조), 투자광고(제57조), 수수료(제58조), 계약 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제59조), 손해배상책임(제64조) 등이 적용된다.

개정 보험업법도 고객보호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금융투자업과 기능적 공통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법의 강화된 영업행위규제를 과감히,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기능적 공통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보험업의 발전정도를 감안한 탄력적인 판단이 필수적이다.[10]

2.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통합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무엇보다도 앞서 살핀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급하는 보험상품의 포괄적 정의, 보험상품 심사절차를 완화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리고 보험회사의 업무영역의 확대나 소비자보호장치의 강화 등은 모두 자본시장통합법의 입법취지와 그 방향을 같이하는 것이다.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금융신상품의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전통적 예금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낮아지는 반면 고령화와 저금리에 대응한 투자형 상품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 법에 의하면 ‘투자성(원본손실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하여 동 정의에 포섭되는 모든 금융

투자상품을 법의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변액보험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과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보험회사는 기존의 보험상품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상품의 취급할 수 있게 되고, 보험회사의 자산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보험사의 자산운용 및 자산관리기능이 강화될 것이며, 보험 모집조직 활용으로 투자권유대행인제도의 빠른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보험업법 개정안에 있는 지급결제시스템 직접참여가 허용된다면 보험회사의 업무영역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독자적 영역으로 인식되던 투자성 보험상품과 관련한 경쟁이 심화되어 보험업계로서는 은행, 증권 등 타 권역과 경쟁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고 복잡한 상품이 출시됨으로 인해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이 커져 투자자보호와 관련한 비용이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

(1) 보험업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

가.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상품 취급

2008년 11월 입법예고 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보험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보험상품 심사절차를 완화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감독당국의 사전심의 없이 다양한 신상품 취급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할 경우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포괄적 정의를 함으로써 복합 및 파생 금융상품 등 보험기능과 투자기능을 결합한 혁신적인 보험신상품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자본시장의 성장을 배경으로 확정급여형보다는 확정기여형¹²⁾을 선호

하는 장기추세를 보일 것이 예상되므로 투자기능을 강화한 상품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15]

나. 자산운용 및 자산관리기능 강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투자상품의 비중이 확대되고 다양한 변액 보험상품 등의 출시로 보험자산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도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업무로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최근 노령화로 인한 보험 및 연금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보험계리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보험회사로서는 자산관리시장에서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투자권유대행인제도 정착을 위한 보험모집조직 활용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제도(동법 제51조)를 도입하였는데 투자권유대행인이란 금융 투자업자의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권유를 대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현행 간접 투자자산운용업법상 취득권유자제도(동법 제52조 제1항)를 확대한 것이다. 동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에는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위해 투자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였던 것과는 달리 투자 권유대행인이 직접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권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

1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며,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설계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로서는 이러한 시스템에 익숙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에 타 권역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¹³⁾ 즉 기존 모집조직을 활용하여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 재무설계와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 판매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의 투입으로 투자권유대행인 관리 및 상품교육 등 은행 및 증권회사 등에 비해 원활한 조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¹⁴⁾

라.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지금까지 소액결제업무¹⁵⁾는 일부 외국계은행을 포함한 은행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우체국, 농·수협 회원조합 등에서 수행해 왔다. 한편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주로 증권위탁 계좌와 증권종합계좌(CMA) 및 증권저축계좌 등을 개설한 고객에 대하여 은행과 제휴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면 금융투자기관은 '투자자 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형태'로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즉,

13) 동제도의 도입으로 은행의 펀드판매는 다소 위축되고, 따라서 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전망이다.

14) 보험업법상 등록요건을 갖춘 보험모집종사자의 경우 투자권유를 대행할 수 있는 상품으로 '집합투자증권'만을 한정하고 있다(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다목). 따라서 보험모집종사자가 신탁상품 등을 투자권유하기 위해서는 동 상품 등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15) [20]에 의하면, 소액결제시스템은 어음교환, 지로, CD/ATM, 타행환 공동망, 직불카드 공동망, CMS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B2B결제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액결제시스템은 은행들이 설립한비영리 사단법인인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데, 결제원은 타행환공동망, CD/ATM망 등으로 금융기관 간에 주고받은 금액을 정리하여 청산하고, 이 금액은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계정을 통해 금융기관간에 최종 결제 처리한다.

종래 대행은행을 통해 참여하던 간접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결제원에 직접 가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되 다른 참가 은행과의 차액결제는 결제대행은행이 수행하는 방식이 도입되는 것이다.¹⁶⁾[16] 그러나 겸영투자업자는 자본시장통합법 제40조 각호의 금융투자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므로, 금융투자업무를 겸영업무의 형태로 영위하게 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동법 제40조). 한편 은행권 등의 반발로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나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도 보험회사가 지급결제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¹⁷⁾를 마련해 놓았다. 보험회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게 되면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타금융권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절감하는 등 자산관리 업무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고 새로운 사업모형의 개발 등 업무영역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보험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면

가. 투자성 보험상품과 관련한 경쟁심화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에 따라 우연에 의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근거로 설계되는 증권권역의 파생상품이 상호 대체제로 기능할 수 있다. 향후 상품개발 기법이 발전하

16)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향후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이 독점하던 지급결제망에 금융투자회사 등의 직접참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요구불 예금 등 저원가성 수신의 은행권 이탈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17) 보험업법 개정안 제11조 제1항에서“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조 동항 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금이체업무”를 열거하고 있다. [1]

여 보험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파생상품이 등장하게 되면 이는 보험업계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최근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변액보험 및 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간에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로서는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비하여 금융투자상품과 차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투자자보호와 관련한 문제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신종 금융투자상품과 일반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상품이 대거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동법에서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설명의무를 부과(동법 제47조)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동법 제48조)고 규정하고 있다. 설명의무의 미이행 또는 중요사항 설명 누락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로서는 설명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게 하기 위한 직원들의 교육비용 및 분쟁발생시의 소송비용과 동 의무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한편 투자권유 사전에 면담 등을 통해 투자자의 특성 파악을 의무화하는 ‘know-your-customer rule’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 특성에 부합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의 원칙이 도입되어(동법 제46조 등) 투자자 특성의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유지비용이 증가 될 것이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소비자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였고, 이에 보험업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험회사로서는 금융투자상품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 통합법과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보호장치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3)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쟁점사항

가. 보험산업의 구조변화와 관련된 문제

금융산업 개편의 흐름 속에서 대형보험사는 보험 그룹을 형성하여 대응하고자 할 것이고, 소형보험사는 다른 금융그룹에 편입되는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험회사를 소유하지 않은 일부 금융그룹은 퇴직연금 등 연금시장의 확대와 고령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망 속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은 타 권역과 마찬가지로 보험업계에 기회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투자성 상품과 관련하여 무한경쟁에 노출됨으로써 존립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투자권유자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존 보험모집조직의 활용 및 보험상품과 연계된 파생상품개발 노하우 등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을 제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한편 보험사에 유보된 자산은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므로 그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 바, 엄격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변액보험상품의 자본시장통합법 적용문제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변액보험(연금)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실적배당형 상품은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일부에서는 변액보험 중 납입원금 이상의 최저지급보증(사망보험금·연금)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액보험도 중도해지 될 경우, 가입기간 동안의 투자실적에 따라 환급금이 결정되므로 만기 또는 사망사고 발생 전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여 동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포섭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살핀바와 같이 자본시장통합법의 취지는 포괄주의를 취하여 회사로 하여금 상품개발·판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다양하고 복잡한 상품의 출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을 제고함에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건 금융상품 매매계약체결로 인한 원본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를 법의 규율 하에 두어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 보험설계사의 신탁상품 투자권유대행 허용문제

자본시장통합법 제51조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다목에서 보험업법상 등록요건을 갖춘 보험모집종사자는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생명보험회사에서는 현재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이유로 보험설계사도 신탁상품투자권유대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6]에 의하면, 동법이 보험모집종사자로 하여금 신탁상품투자권유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아니고, 이들도 동 법 시행령 등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능력 검증시험을 거친 후에 동 업무를 할 수 있다. 증권 및 은행권역에서도 동 업무를 수행하려면 일정한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하는데, 보험모집종사자의 경우에만 별도의 자격검증 없이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투자권유대행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라. 지급결제참여와 관련한 문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보험업법 개정안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지급결제 시스템 직접참여가 허용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았고, 동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의결을 거쳐 시행된다면, 보험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보험상품은 실명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급결제용 상품으로 수시입출금가능상품이 보험회사에게 허용될 경우, 동 상품이 실명제 적용 회피용으로 악용된다면 사회적 혼란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동 법안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논리도 만만치가 않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동 내용과 관련, 보험회사에 소액결제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행정부에 넘기는 꼴’이라는 이유로 정무위 위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동 제도를 업계 간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취지와 보험업법 개정취지가 금융소비자 편익제고와 투자자보호에 있음을 고려할 때, 오히려 논의의 초점은 금융실명법 등 서로 충돌되는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고,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관련한 안전성 확보 방안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마. 감독상 시사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전 금융관련 법규에 의하면 기관중심의 규율체제를 취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역시 기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기능중심감독과 기관중심감독이 혼재된다면 주 감독부서의 구분이 모호해져 업무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

다.

예컨대 은행·보험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독 우선순위에 대해 기관 담당부서와 기능담당부서 간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해 해당 회사에 대한 이중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권역 등 자본시장 관련 회사에 대한 규율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은행·보험권역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역별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금융권역간 규제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은행, 보험회사 등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복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권역별 차별 없이 일관된 규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나아가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는 운영의 묘미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12]

(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가. 새로운 사업모형의 개발

기존의 경영전략을 수정해 금융겸업화와 경쟁의 글로벌화를 수용하는 사업모형을 개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중심의 사업모형에서 벗어나 핵심 고객의 니즈를 중심으로 사업모형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단위의 모듈화를 통해 고객니즈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사업부문간 거래의 투명성을 기초로 수익 중심의 사업구조로 전환하며, 보험회사 단독으로 타금융회사와 경쟁하기보다는 기능별로 자회사를 두고 보험금융그룹을 형성하여 시너지 효과에 기

초한 경쟁력 강화 도모해야 한다.

보험영업이익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금융상품 판매 및 타금융업무 대행 등을 통한 수수료 수입 등을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단기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약점 보완과 비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상대와의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여 더 큰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 구사해야 한다.

보험회사들은 금융투자회사들과 투자형 상품 경쟁을 하게 되면서 상품설계 및 자산운용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므로, 보험 및 연금 상품의 투자성이 강해지면서 창의성에 입각한 상품개발과 자산운용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한 사업모형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글로벌화와 금융겸업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상장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여 대형화를 추구하는 한편으로 기능별 전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설립 또는 인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나. 보험기능과 투자기능을 결합한 상품개발 강화

금융상품 규제가 포괄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험 기능과 투자기능을 결합한 상품개발도 진행되어야 한다. 향후 보험상품의 성장영역은 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간병보험이라 할 수 있는데, 타금융권과 경쟁하는 연금 영역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연금의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펀드상품과 경쟁하게 될 것이므로 종신보장 또는 수익률에 초점을 맞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자본시장의 성장을 배경으로 확정급여형(DB)보다는 확정기여형(DC)을 선호하는 장기추세를 보일 것이 예상되므로 투자기능을 강화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안정적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투자성향이 강화되어 전체 개인 금융자산에서 리스크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배 이상 확대된 12.5%에 달하며, 2005년에 비하여 2006년에는 투자신탁이 15.1조엔, 국채가 5.5조엔 늘어난 가운데, 노후 대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변액연금도 13.4조엔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외화예금, 주식, 투자신탁, 대외증권 투자를 포함한 리스크자산의 규모는 1998년말 88조엔에서 2006년말에는 187조엔으로 늘어났다.

다른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단순히 하나의 경제적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기능을 담을 수 있는 복합상품으로 진화되어야 할 것이며, 복합상품은 그 자체로서 복합적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경제적 기능이 결합되면서 그 자체 내에서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을 연계시킨다든지, 연금보험과 장기간병보험을 연계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이지만, 이러한 복합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 니즈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각종 기초위험률, 리스크관리, 판매채널의 능력, 클레임관리 등 다양한 측면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고객 중심의 마케팅과 판매채널 정비

금융마케팅의 핵심경쟁력은 고객의 니즈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인 금융자문 및 자산관리를 해주는 데 있으므로 보험회사도 이러한 트렌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기존의 보험상품 중심의 마케팅에서 벗어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고려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이를 운용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서비스를 통한 고객 중심의 마케팅에서 경쟁력을 확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적인 보험회사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고객의 자산과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금융회사로서의 브랜드 이미지제고가 시급하다.

고객기반 확충과 세분화, 고객군별 적절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제공, 직급 및 전속판매채널 등의 전문성 강화, 기능별로 특화된 후선지원조직 강화 등이 필요하며, 특히 거액자산가층이 경제양극화와 자산가치 증가를 배경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목표고객으로 마케팅을 강화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판매채널의 독립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한 판매채널 전략을 수립 하는 한편으로 보험상품 이외에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의 종합화금융서비스 제공 능력도 높여야 할 것이다. 판매채널의 독립화 경향에 대응하여 직판채널을 육성하고 판매자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기존의 보험설계사 및 전속대리점 채널의 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 고급화 도모가 필요하다.

라. 자산운용부문 강화

보험회사 자산규모 확대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증가,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 필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자산운용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장기적으로 저금리 트렌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 자산운용수익률을 높여야 상품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변액연금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다른 금융권의 연금상품 또는 펀드 등과 수익률 경쟁을 하게 될 것이므로 자산운용경쟁력의 제고가 중요하다.

보험회사 또는 새로 도입될 보험지주회사 산하에 자산운용회사를 설립하

여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임과 아울러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내에 자산운용부문을 둘 경우 전문성 및 규모의 경제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우므로 분사하여 자산운용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위탁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며, 전문사모펀드회사를 설립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자산운용수익률 제고와 아울러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 도모하여야 한다.

마. 인사 및 보상 체계 혁신

각 부문별 전문성이 요구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위해서는 현행의 인사 체계 및 기업문화를 혁신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순환보직제로는 업무의 전문성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수 전문인력의 이직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 성과에 대한 보상도 보험산업내 기준보다는 업무의 기능을 선도하고 있는 분야의 보상기준에 맞추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산운용 부서의 경우 보험회사내 일반적 임금체계를 따를 경우 우수한 자산운용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고, 좋은 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곳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사체계 및 보상을 기능별로 경쟁하는 금융회사를 염두에 두고 우수인재를 유치한다는 관점에서 정비 임금 체계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다단계의 복잡한 의사결정 체계에서 벗어나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유지하는 조직체제로 정비하고 핵심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성과중심의 보상 체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9]

3. 보험업법 개정안

(1) 보험업법 개정안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가. 추진배경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은 단순히 증권 관련 법률의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규제체계 전반을 개혁하여 금융시장의 빠르고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법의 시행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투자상품을 종전의 열거주의에서 탈피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보험회사로서는 혁신적인 보험신상품의 개발·취급이 가능해지게 되고 기존 보험모집조직의 활용을 통해 투자권유대행인제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를 받게 될 투자성보험상품의 불안전판매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성장성이 부각되는 투자성 보험상품분야에서 금융투자회사와 직접 경쟁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편 다양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함에 따라 향후 법률 개정이 용이해져 규제 일관성 유지와 시의성 확보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법이 시행되면 은행법, 보험업법 등과의 중복규제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2008년 11월 4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취지의 연장선장에서 제도개선을 정리하였고 이는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4]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가 영위가능한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겸업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이에 대응하여 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함으

로써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상품심사제도를 사전규제보다는 사후심사 위주로 운영하여 보험사의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판매채널을 다양화하면서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판매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한편 보험사의 겸영업무를 확대하고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금융겸업화의 추세에 대응하고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보험상품 개발 및 영업 자율성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능성 증가에 대응하고자 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취지와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나. 주요내용

1) 보험상품의 정의 신설(개정안 제2조)

현행 법규상 보험상품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금융상품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 포괄적으로 정의됨에 따라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보험상품을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위험보장의 발생원인 및 보장내용에 따라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으로 구분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보험의 기능적요소를 기초로 하는 포괄적 정의규정을 마련한 뒤에 시행령에 위임으로 전통적 보험상품으로서 보험업법의 규제적용이 필요한 상품을 열거(명시적 포함)하고 위험보장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보험상품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없는 상품을 한정적으로 열거(명시적 제외)함으로써 보험상품의 구체성을 확보 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보

협상품의 정의를 신설함에 따라 ‘상품정의’와 ‘業정의’를 구분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금융상품의 개발에 따르는 리스크를 방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 겸영업무영역의 확대(개정안 제11조)

현행법은 보험회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제한¹⁸⁾하고 있어 금융겸업화에 대한 대응 및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도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업무로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금융겸업화에 발맞춰 보험사에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을 겸영업무로 허용하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차단막(fire-wall)을 갖추고 등록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보험회사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회사에 허용된 방식의 지급결제업무를 겸영업무로 허용하지만 보험사가 직접 한국은행 지급결제망에 참여하여 청산하고 직업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행은행이 수행하며 개별 보험사가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급결제 업무를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금융업권간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3)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개정안 제11조의 2)

보험회사에 허용된 부수업무 범위를 보험수리업무, 보험사고 조사업무

18) 현행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① 겸영업무로 신탁업과 유동화 자산관리업무(보험업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를, ② 부수업무로 보험수리, 보험사고 조사업무, 연수·출판업무 등을 열거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1]

등으로 제한했다. 보험회사의 건전성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부수업무로 허용된다. 이는 부수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인력, 설비를 활용한 다양한 수익원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4) 보험판매전문회사 신설(개정안 제88조의2)-판매채널 경쟁력 강화

현재 보험설계사 중심의 전속채널 의존도가 높은 국내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제약한다고 판단하여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신설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기존 법인대리점에 비하여 업무범위가 대폭 늘어 자본시장통합법상 인가요건 및 이해상충 방지장치 구축을 전제로 집합투자증권-일임투자자산운용사¹⁹⁾, 집합투자자산운용사²⁰⁾-에 대한 투자중개업 겸영과 보험사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영위가 허용된다.

또한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일정범위 내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배상책임이 부여된다. 이를 위해 매출액에 비례하는 영업보증금을 금감원에 예탁하도록 해 실효성을 제고하게 된다. 특히 불완전 판매율 및 경영현황에 대한 공시,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정기적인 금감원 검사, 감독을 실시하는 등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했다. 법인대리점 제도도 정비되고 보험업법령 등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인 경우에 설계사 및 대리점 등 판매자격 취득이 금지된다. 보험사, 법인대리점,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대해 소속 보험설계사의 상품 및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의무가 부과되고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보험사 소

19) 구 증권FP

20) 구 일반운용전문인력

속 설계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토록 했다.

5)보험상품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의 도입(개정안 95조의 2와 3)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보험상품 판매시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고객이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보험계약 체결시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함으로써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축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상품판매 권유시 고객의 재산상황, 보험계약 체결목적 등을 파악하여 고객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했다. 단, 이는 투자성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보험상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분석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투자자에 한에서만 적용된다. 소비자 구분에 따른 보호도 차등화²¹⁾ 되어 전문소비자는 보험거래가 많은 금융기관, 상장기업 등이며 그 외는 일반소비자로 구분된다. 일반소비자에 대해서는 주요사항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을 적용해 두터운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전문소비자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배제했다. 또한 고의적인 보험금 지급 지연 및 불지급 등 기초서류 준수위무 위반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사전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료 납입 능력 등을

21) 2006년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고객분류의무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2008년 동법 개정안에서는 보험거래가 많은 금융기관, 상장기업 등은 전문소비자로 구분하고, 전문소비자가 아닌 소비자는 일반소비자로 구분하였다. 다만, 자산규모 등 일정 기준 이하의 전문 소비자가 일반소비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 소비자로 간주한다.(보험업법 개정안 제2조 제20,21호)[1]

고려한 보험상품 판매 권유가 이루어져 보험계약 중도해지 등으로 인한 고객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6) 허위·과장광고 규제근거 마련(개정안 96조의 2)

보험상품 광고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사항과 포함해서는 안 될 금지사항을 규정했다. TV광고, 홈쇼핑 등을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광고가 확대되고 있으나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규제근거를 마련했다.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자산운용규제 완화(개정안 제105조)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체계가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보험사는 자회사, 파생상품, 부동산 투자에 대해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제를 받아 투자여건이 제한돼 있는 것을 보험사의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자회사는 유형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또한 운용대상 파생상품이 열거주의 방식으로 한정돼 있는 것을 앞으로 유형 구분없이 투자가 가능해진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총액한도는 총자산의 5%로 축소된다. 소유 가능한 유형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용 부동산에 한해서는 총액한도 내에서 유형에 관계없이 소유가 허용된다. 귀금속, 골동품 및 서화의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된다. 자산운용규제 완화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및 수익성을 제고 하는데 있다.

8)보험상품 개발절차 개편(개정안 127조~129조)

현재 모든 보험상품은 선임계리사,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의 3중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 것을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율 상품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보험상품을 (판매전)신고상품과 (판매후)제출상품으로 구분하고 각각 3중의 확인절차를 이행토록 요구하던 것을 (판매후)제출상품을 자율상품으로 전환하여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의 사전 확인절차를 폐지하고, 내부검증 절차만 거쳐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자율상품의 경우에 보험사 내부검증시스템만을 거쳐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단, 신고상품의 경우에는 구분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기존과 같이 3중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자율상품 도입으로 상품개발의 창의성, 신속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9)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한 관련 혐의사실 확인 요청권 신설

(개정안 제162의 2)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수법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사의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인식하여 보험사기 정의를 신설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보험사기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관련 공공단체에 대해 보험사기와 관련된 혐의사실의 존재·해당 여부 등을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관련 기관간 보험사기 정보 공유를 통해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보험회사의 금융투자업무 영위방법

가.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과거 금융관계법령이 금융기관별로 각 업법에 규정된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한 것과는 달리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기능별 진입기준을 마련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단위별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전반적인 진입요건은 과거보다 완화하여 규제완화의 추세를 따르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의 기능별 특성을 반영하여 진입요건의 수준을 기능별로 차등화하고 있다.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은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 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그 업무가 속하는 금융기능에 필요한 진입요건을 갖추어 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법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인가업무단위를 추가하여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법 제16조, 제21조) 22)

보험회사가 자본시장통합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므로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의 형태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나. 신고에 의한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의 특례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업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융업을 영위

22)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이 업무범위 확장 시 추가할 금융기능을 선택하여 인가를 신청하고, 감독기관은 해당 금융기능에 요구되는 진입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는 것을 "add on 방식"이라 한다.

하고 있는 기존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가 및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할 경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법 부칙 제5조 제1항, 제2항). 예컨대, 보험회사가 금융투자업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인가 또는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 자본시장통합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데(법 부칙 제5조 제1항), 금융위원회는 신청회사가 인가 또는 등록 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법 시행일(2009년 2월 4일)전일까지 그 결과를 신고한 보험 회사에게 통보하며, 이 경우 인가 및 등록유지요건을 갖춘 것으로 통보받은 보험회사는 법 시행일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법 부칙 제5조 제2항).²³⁾

과거 보험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상 규정되어 있는 금융투자업 중 집합투자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고 동법 시행 후에도 동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회사는 생명보험 21개사와 손해보험 9개사에 이른다.

다. 업무단위 추가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특례

보험회사가 기존에 수행하는 업무 이외에 새로운 유형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있다. 금융투자업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에 새로운 업무단위

23) 다만,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등과 같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금융투자업 인가 규정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관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동법 제77조 제2항). 그러나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계약 체결 등을 할 경우에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등의 영위를 위한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통합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의 영위업무와 새로 추가하려는 업무 단위를 종합하여 금융투자업 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법 부칙 제6조 제1항). 금융위원회는 인가 또는 등록신청의 내용을 심사하여 법 시행일의 전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부칙 제6조제2항).

(3) 보험업법 개정안의 남아있는 문제점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만은 남아두고 있지만 아직도 개정안 반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보험사 주주 이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첫째, 보험상품 심사절차를 개편하여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의 확인 및 감독 없이 신상품을 마음대로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민영의료보험일지라도 외국의 경우 보험 지급률은 유럽은 대체로 80~85%(즉, 100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80~85원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함)이고 민영의료보험의 천국이라는 미국도 보험 지급률이 7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은 지급률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고 대체로 약 60%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의 폭리를 규제하고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상품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오히려 보험상품 개발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은 가입자들의 피해야 어찌되었든 보험회사의 폭리를 더욱 보장하겠다는 것이다.[18]

둘째, 보험회사의 자회사, 파생상품, 부동산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낮춰서 보험가입자가 낸 돈으로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다른 곳에서 돈벌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회사 본연의 임무는 보험 가입자를 위한 상품을 개발하여 보험가입자가 위험에 닥쳤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파생상품 투자 및 부동산 투자 등 보험회사가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한 곳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당연히 보험회사의 주된 업무는 뒷전이 될 것이다. 게다가 돈벌이를 위해 투자한 곳에서 손해가 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낸 돈으로 메우려 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세계 1위 보험사였던 AIG가 파생상품과 부동산 투자 등 위험한 투자를 멋대로 하다가 결국 망해서 구제금융을 받은 이 시점에 보험회사의 자본운용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풀어주는 정책이 얼마나 폐해가 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보험회사가 투자자문업²⁴⁾·투자일임업²⁵⁾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급 결재 업무 또한 허용한다. 정부와 보험회사는 “다양한 경영·부수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영업 자율성을 높이고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보험회사가 노리는 핵심은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금융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보험회사는 이제 신용카드 업무도 하고 예적금 상품도 판매하겠다고 한다. 대기업이 금융 산업을 장

24) 투자자문자산의 가치 또는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투자 판단에 관하여 구술·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

25) 고객으로부터 투자자문자산의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하여 투자하는 영업

악하기 쉽게 법령이 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보험사기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금융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여부 등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였다.

이 조항은 이미 개발해 놓은 실손형 보험상품²⁶⁾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험회사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다. 개인의 평소 질병정보를 알아야 자주 아픈 사람,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등은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요율을 높일 수 있고, 예전에 앓았던 병을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민영보험회사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겨준다는 것은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보호를 등한시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더욱이 보험사기를 방지한다는 핑계로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전국민을 보험사기를 일으킬 범죄자로 가정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보도자료[1]에 보험사기 혐의자로 예시한 ‘최근 3년간 총 입원일수가 180일 이상이며 보험금 청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라는 구절을 보면 이 경우 암 환자, 심혈관 질환자, 뇌혈관 질환자 등 중증질환자 대부분이 해당되는 것이다. 이 말은 거의 모든 중증질환자를 의심하여 조사하겠다는 것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는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될 때 검찰이나 경찰이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해서 보험사기 수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금융위에서 보험사기 조사를 하기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할 필요가 없다.

[17]에 의하면,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근본원인은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대비책의 결여 때문인데 이번 금융위의 개정안은 사후적인 정보제공과 적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26) 개인이 실제 의료기관에 낸 돈만큼 돌려주는 보험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 체계에서 검경을 통한 수사와 정보열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에 대한 월권이며, 개인질병정보가 가입자의 급여비용 확인이라는 애초의 질병정보 수집목적에서 벗어나 민간보험사의 ‘영리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쓰여서는 안 될 것이다.

Ⅲ. 결 론

이상에서 금번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촉발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자본시장통합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보험제도변화의 기본방향은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국제적 금융리스크 관리 감독의 강화 경향 등으로 향후 보험산업을 둘러싼 제도 및 규제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산업 관련 제도의 주요 변화방향은 보험산업의 겸업화 및 종합화 진전, 판매채널의 다양화, 건전성 및 리스크 중심의 감독 강화, 소비자 보호의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보험제도변화의 주요내용으로 보험회사들은 겸업화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 기능을 확보하여 타업권과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지주회사 방식 등을 활용한 대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실시, 보험업법 개정 등으로 보험회사는 투자자문업·일임업의 겸영허용, 지급결제 허용 등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된다. 또한 자산운용관련 규제를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대상이 광범위해질 전망이다. 더욱이

금융겸업화의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지주회사가 허용됨에 따라 금융의 대형화, 그룹화 여건이 마련되었다. 2000년 이후 보험판매제도는 온라인전업사, 방카슈랑스 및 홈쇼핑, 설계사 교차모집제도 등 여러 제도가 도입되면서 판매채널이 다양화되어 왔다. 향후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에 판매채널의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의 신설, 법인 대리점제도 및 기타판매채널 제도의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판매채널의 다양화는 가속될 전망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에 한함)로 정의되는데, 기존 법인대리점에 비해 업무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금융의 통합화와 세계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은행권의 신BIS협약 적용, 보험권의 Solvency II 추진 등 리스크 중심 감독정책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

금융상품의 복잡·다양화, 판매채널의 복잡화, 금융권간 경쟁심화 등으로 인하여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보호가 한층 강조되는 추세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적합성의 원칙, 보호 차등화, 상품설명 및 정보 제공 의무 강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증가에 대비하여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초래되는 보험사기에 의한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 참 고 문 헌 -

- [1]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및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2008
- [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
- [3] 류건식, “보험회사의 리스크중심 경영전략”, 손해보험, 2008
- [4] 보험일보 기사, 2008, 12. 17
- [5] 세계일보 기사, 2007. 08. 31
- [6] 손상호 · 구분성 · 임병철 · 김자봉 · 남재현 · 이석호, “금융겸업화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금융연구원, 2005
- [7] 신상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 조사역
- [8] 신종협 · 이진면 · 이태열 · 황진태 · 유진아 · 김세환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자료 2008-4, 2009
- [9] 오영수,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보험개발원 CR 2007-4, 2007
- [10] 한기정, ‘금융투자업법의 제정이 보험업법 개정예 미칠 영향’ (보험개발연구원) 2008
- [11] 재정경제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2006-6
- [12] 정세창 · 권순일, “세계 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보험개발원, 정책연구자료 2001-3, 2001
- [13] 신상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
- [14] 정신동,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금융감독원/재무학회 공동심포지엄 발표논문>,
- [15] 정신동·송홍선,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증권

- 136호, 2008년 가을호」(한국증권업협회),
- [16] 윤성은, “비예금수취기관 지급결제망 직접 참여의 의미와 문제점”, 「금융 2008년 10월호」(전국은행연합회),
- [17] 보험업법 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08.11.24.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 [18] 보험업법개정안 의견서(시민건강증진연구소, 보건의료단체연합)
- [19] 정순섭·오승곤, “금융투자업성장파 투자자보호”, 2008.11.11,
<한국금융학회/예금보험공사 주최'08년 동계 정책심포지엄>
- [20] 윤성은, “비예금수취기관 지급결제망 직접참여의 의미와 문제점”, 「금융 2008년 10월호」(전국은행연합회)
- [21] 이윤형,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회사의 법적규제에 관한 소고”, 「선물시장 2008년 10월호」(한국선물협회), 14면

ABSTRACT

The Study about the Effect of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in Operation to The Research on Amendment of Insurance Act

Shin, Keon Yong

Major in finance · insurance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upervised By Kim, Ju Hong Ph.D

The extended span of life and the declined birthrate jeopardize the future of Insurance Industry.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makes the situation worse for the entire Insurance Business. Since the Insurance products are under the Insurance Act, the promulga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has less influence than the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Last December, the newly enacted Insurance Act, which submitted after the Cabinet council, has contained the Principle of Relevance and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 on insurance products to protect the

consumers' right

This measure would be helpful to reduce the mis-selling over insurance products which have been much complicated ever, such as Variable Life Insurance.

The Insurance Act has been delayed by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f the Assembly agrees on this bill, it is expected to be activated at the end of this year.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Securities companies and Banks have to provide the consolidated level of their customer services in terms of customer protection from mis-selling. From this perspective, insurance products could be required at the same standard of services.

Before the amended Insurance Act is activated, the Insurance companies need to take proactive actions such as company-level employee training session in order to meet the customers' expectation. What matter the most is how to include the particularity of the insurance products.

In this article, we would like to consider the possible situation in Insurance Industry after carrying out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and to develop the successful suggestions. At the same time, the research on amendment of Insurance Act will be presented.